「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 중단으로 사업 관련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폐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보조금 지급 관련 예산 삭감 조치

○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1995년 1월 제정된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안으로,

○ 검토 결과,

-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한 새마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조례 등에 대하여 적기에 정비하여 자치 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